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7. 2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7.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9.7.16.

다. 상정일자: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9.7.2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박광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28조제4항)

2)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 정비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략 규정사항 개정(안 제3조의2)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법령 위임사항 반영 (안 제5조)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조치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안 제22조제1항)
-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27조)
- 2인 이상의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89조제2항)

3) 기타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3. 검토보고(전문위원 조희옥)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의견으로는

- 안 제28조제4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하는 사항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감면율을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업 대상에 따라 안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와 안 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와 같이 대부요율(1%) 적용대상(사회적기업)과

감면율(50%) 적용대상(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바,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감면규정

규정	대상	감면율
제17조 (사용료 감면) 제35조 (대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100분의 50 이내

〈표2〉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감면규정

규정	대상	감면방법
제25조 (대부료 등의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대부료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 기 시행
제28조 (대부료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감면율: 100분의 50이내 ※ 개정안

- 안 제3조의2의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재산 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임.

- 안 제 22조제1항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조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 안 제27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편람의 지침 변경내용에 따라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 포함 15개 조례 개정(참고자료 현황 참고)
- 기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참 고 자 료

1. 자치구 조례 ‘층별 가중 적용방법’ 삭제 여부

□ 삭제: 15, 미삭제: 11

2019.06.30. 기준

연번	자치구명	삭제여부	개정일
1	서울시	삭제	2017. 03. 23.
2	종로구	삭제	2018. 09. 28.
3	중구	미삭제	
4	용산구	미삭제	
5	성동구	미삭제	
6	광진구	미삭제	
7	동대문구	미삭제	
8	중랑구	삭제	2017. 09. 08.
9	성북구	미삭제	
10	강북구	삭제	2016. 12. 30.
11	도봉구	삭제	2016. 12. 29
12	노원구	삭제	2017. 03. 16.
13	은평구	삭제	2017. 12. 29.
14	서대문구	미삭제	
15	마포구	미삭제	
16	양천구	삭제	2018. 06. 28.
17	강서구	삭제	2017. 04. 05.
18	구로구	삭제	2017. 11. 16.
19	금천구	삭제	2019. 05. 09.
20	영등포구	삭제	2019. 06. 28.
21	동작구	미삭제	
22	관악구	삭제	2017. 07. 20.
23	서초구	삭제	2017. 10. 26.
24	강남구	미삭제	
25	송파구	삭제	2017. 11. 02.
26	강동구	미삭제	

※ ‘층별 가중 적용방법’ 조항 삭제 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